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6호)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4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4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4
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2. 사업종료 후 미해산조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 취소의무 또는 해산 간주(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등)	8
3.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간주 시 권리·의무 승계(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11
4. 그 밖의 사항(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7항,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등)	14

I.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

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II.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3.

다. 회 부 일 : 2024. 9. 4.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등(안 제14조의2)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생략) <u><신설></u>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u>권한을 대행한다.</u>	<u>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봄

주택조합¹⁾은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을 위하여 많은 수의 구성원이 결성하며, 주택조합을 설립 또는 해산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함.²⁾

1)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북특별자치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특별자치도
-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법 제14조의2³⁾는 주택조합의 해산 사유로 ①그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항)와 ②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제2항)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된 경우”의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합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각종 경비 및 비용의 집행 등에 따라 조합원이 배당받을 청산금이 감소하거나 조합 임원의 위법행위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을 해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4조의2제3항), ② ①의 기간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3)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임(안 제14조의2제4항).

주택조합의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조합이 존속하는 경우의 해산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 분쟁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14조의2제3항⁴⁾은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주체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조합장”을 “임원”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종료한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종료 후 미해산조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 취소의무 또는 해산 간주(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해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택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조합이 해산을 의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봄

개정안 제14조의2제5항은 주택조합이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서영교의원안) 해당 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조배숙의원안) 내용임.

안 제14조의2제5항은 설립인가 취소의무 또는 해산 간주를 통하여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의무의 이행 및 주택조합 해산 의결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11조제1항5)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조합원의 결의를 ‘인가’로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에 따른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 변동에 관하여 조합 내부의 결정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주택조합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5)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비법」 제86조의2제3항6)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대신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조합원별 권리·의무 분담을 정한 후 청산인이 그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으로, 분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간주 시 권리·의무 승계(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⑤(생략)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⑤(생략)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분담금 액수는 해당 주택조합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같은 것으로 본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이 해산되거나 설립인가 취소(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5항) 또는 해산 간주(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5항)된 경우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해산간주 또는 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⁷⁾ 공동소유 관계는 ‘총유(總有) 관계’이므로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⁸⁾ 현행 법령상⁹⁾ 해산 시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의 확정 및 변경도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해산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총유’ 관계를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는 ‘공유’ 관계로 전환한다면 분담금 결정 이후 발생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권리·의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해산·해산간주 또는 설립인가 취소 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및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9항)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7)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8)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⑥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유 관계 및 공유 관계의 법적 성격, 조합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행정권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그 밖의 사항(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7항,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등)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u>발기인</u> 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 ----- ----- 발기인 등----- ----- ----- ----- ----- -----.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 ----- -----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 ----- ----- ----- ----- -----.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 -----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u><신설></u>		1.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u><신 설></u> <u><신 설></u> ⑤ (생략) 제96조(청문)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 가취소 3. 4. (생략)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략) 4의3. 제14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 니한 자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6조(청문)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 ----- 3. 4. (현행과 같음) 제104조(벌칙) ----- ----- ----- -----. 1. ~ 4의2. (현행과 같 음) 4의3. 제14조의2제7항- ----- ----- -----	<u>결의하는 경우</u> 2. 제2항에 따라 사업 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해산 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4조(벌칙) ----- ----- ----- -----. 1. ~ 4의2. (현행과 같 음) 4의3. 제14조의2제8항- ----- ----- -----

현행	서영교의원안	조배숙의원안
4의4. ~ 14. (생략)	4의4. ~ 14. (현행과 같음)	4의4. ~ 14.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봄		

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의 통지
(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3,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및 제104조제4호의3)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사유에 관한 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을 반영하고 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주체를 추가하면서(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7항 및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4호의3).

총회 소집의 통지에 관한 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7항 및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8항의 경우 총회 소집 통지의무의 부담 주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배숙의원안과 같이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벌칙 신설과 관련하여 해산총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청산인 선임 사유의 추가(서영교의원안 제14조의2제8항,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9항)

서영교의원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결의에 관한 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조배숙의원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의 해산 결의에 관한 안 제14조의2제3항·제4항과 주택조합의 해산 간주에 관한 안 제14조의2제5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 결의 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안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 간주 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조배숙의원안 제14조의2제9항은 주택조합의 해산 간주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 청문 사유의 추가(서영교의원안 제96조제2호)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이 일정 기간 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76